

등록신청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(UH) [주식]
- **정정 사유** : ①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**효력발생일** : 2020. 9. 30.
-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정 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1.31 기준	2020.8.31 기준
매입/환매 방법	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	[매입] 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[환매] 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	<u>(2020.10.5. 시행)</u> [매입] 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경과후 :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[환매] 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17시 경과후 :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	-	2020.9.30. : <u>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(2020.10.5. 시행)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	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시 기준가격 적	-	2020.9.30. : <u>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/환매시</u>



모투자신탁의 연혁]	용일 변경		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(2020.10.5. 시행)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1.31 기준</u>	<u>2020.8.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1.31 기준</u>	<u>2020.8.31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 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 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	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 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 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2)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 준가격	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청구시 기준가격 적용 일 변경	①17시 이전 : 제3영업일 ②17시 경과 후 : 제4영업 일	(2020. 10. 5. 시행) ①17시 이전 : 제4영업일 ②17시 경과 후 : 제5영업 일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2)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 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	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환매청구시 기준가격 적용 일 변경	①17시 이전 :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②17시 경과 후 : 제4영업 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 일에 환매대금 지급	(2020. 10. 5. 시행) ①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②17시 경과 후 : 제5영업 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 일에 환매대금 지급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1.31 기준</u>	<u>2020.8.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
<p>사항</p> <p>나. 주요 업무</p> <p>(3) 업무위탁</p> <p>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</p>	<p>변경사항 반영</p>		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	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수익자총회 등</p> <p>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</p>	<p>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</p>

		<p>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〈신 설〉</p>	<p>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<u>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<u>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u></p> <p><u>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</u></p> <p><u>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</u>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			<p><u>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</u></p> <p><u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	<p><u>예탁결제원</u></p> <p>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</p>	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 <p>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	<p><u>한국예탁원</u></p>	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